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2의3] <개정 2019. 10. 15.>

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(제39조제6항 관련)

## 1. 진폐일반 의료기관

- 가. 안정기 상태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
- 나. 15일 이내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
- 다. 폐암환자 등 보존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
- 라. 그 밖에 의학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

## 2. 진폐전문 의료기관

- 가. 신규 진폐환자 및 중증환자 등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
- 나. 단기간 통원을 통해 질병의 진행상태 확인이 필요한 환자
- 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
- 1) 활동성 폐결핵으로 격리치료, 내성결핵치료, 항결핵제 부작용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2) 흉막염(가슴막염)으로 입원 치료, 수술적(흉관삽입술 등)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3)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4) 폐기종(폐공기증), 기관지염, 큰음영에 따른 정밀평가 기간과 이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 및 2차 감염에 의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5) 공기가슴증으로 인한 안정 기간 및 흉관삽입술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6) 폐성심 및 심폐기능 고도장해 $(F_3)$ 에 따른 산소요법 및 기계호흡 치료가 필 요한 경우
- 7) 폐암에 따른 항암치료(화학, 수술, 방사선등의 요법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진 포함)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8)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(비결핵성 항산균 감염)에 따른 비결핵성 항산균 동정 및 이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9) 각혈에 따른 기관지동맥색전술(상급종합병원과의 협진 포함) 치료가 필요한 경우
- 10) 그 밖에 의학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